

※ 번역문은 민원 신청을 위한 참고용이며, 기존의 한글 서식에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こちらの翻訳文は民願申請の参考用であり、提出時には既存の韓国語の書式に韓国語でご記入くださいますようお願いいたします。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18. 12. 19.> 자동차365(www.car365.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自動車登録規則 [別紙第9号書式] <改正2018年12月19日> 自動車365 (www. car365. go. kr) でも申請が可能です。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서

自動車新規登録申請書

※ 뒤쪽의 유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음영 처리된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裏面の注意事項を参考に記入し、申請人はグレーの欄には記入しないでください。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 []には該当する項目に「✓」をつけてください。 (表面)

접수 번호 受付番号	접수 일시 受付日時	발급 일시 発給日時	처리 기간 処理期間	즉시 即時
소유자 所有者	성명(명칭) 氏名 (名称)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法人登録番号)		
	주소 住所			
	전자우편 メールアドレス	(휴대)전화번호 (携帯) 電話番号 (제작결함 시정 통지 시 문자 발송) (製造欠陥是正の通知時にメッセージが送信されます。)		
자동차 自動車	등록 번호 登録番号		색상 色	
	(구)등록 번호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만 해당) (旧) 登録番号 (抹消登録された自動車を再登録する場合のみ該当します。)			
	사용 본거지 (주민등록지, 법인 등의 주 사무소 또는 지점) 使用本拠地 (住民登録地、法人等の本店又は支店)			
	용도 用途	비사업용 非事業用 []관용 []개인용 []법인·단체용 []公用 []私用 []法人・団体用		
		운수사업용 運送事業用 []개인택시 []개인택시 외 []個人タクシー []個人タクシー以外		
비과세 코드 非課税コード	부관 附款	부관 종료일 附款終了日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自動車管理法」第8条、「自動車登録令」第18条及び「自動車登録規則」第27条に基づき、上記の通り申請します。

년 월 일

年 月 日

신청인 성명
申請人の氏名

(서명 또는 인)
(署名又は印)

생년월일
生年月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特別市長・広域市長・特別自治市長・道知事・特別自治道知事又は市長・郡守・区庁長 殿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行政情報の共同利用に関する同意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뒤쪽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私は、本件の業務処理に関して、電子情報処理組織及び「電子政府法」第36条第1項による行政情報の共同利用により、特別市長・広域市長・特別自治市長・道知事・特別自治道知事又は市長・郡守・区庁長が、裏面の確認事項を確認することに同意します。

※ 신청인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등기부등본은 제외합니다)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申請人が特別市長・広域市長・特別自治市長・道知事・特別自治道知事又は市長・郡守・区庁長の確認に同意しないか、又は電算情報処理組織及び「電子政府法」第36条第1項による行政情報の共同利用によって確認がとれない場合は、該当する書類（法人登記簿謄本は除く）を申請人が直接提出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신청인(대표자)
申請人（代表者）

(서명 또는 인)
(署名又は印)

210mm×297mm[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신청인
제출서류
申請人が
提出する
書類

1. 신조차·수입차

1. 新造車・輸入車

- 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나호·다호의 서류로는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イ. 所有権を証明する書類(口号・ハ号の書類では所有権を証明できない場合のみ提出します。) 1부
나. 자동차제작증(신조차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ロ. 自動車製作証(新造車の場合のみ提出します。) 1부
다.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를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수입차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자기인증능력을 갖춘 수입자가 수입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ハ. 輸入申告済証又はそれに代わる税関の証明書(輸入車の場合のみ提出します。但し、「自動車管理法施行規則」第34条に基づく自己認証能力を備えた輸入者が輸入した場合、提出は不要です。)
라.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二. 臨時運行許可証及び臨時運行許可ナンバープレート(臨時運行許可を受けた場合のみ提出します。)
마. 신규검사증명서(「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4에 따라 자기인증이 면제된 자동차만 제출합니다.)
ホ. 新規検査証明書(「自動車管理法」第30条の4に基づき自己認証が免除された自動車のみ提出します。)
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면허·허가·등록·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용 자동차만 제출합니다.) 1부
ヘ. 「旅客自動車運送事業法」による旅客自動車運送事業、又は「貨物自動車運送事業法」による貨物自動車運送事業に関する免許・許可・登録・認可もしくは届出を証明できる書類、又は事業計画の変更を証明する書類(事業用自動車のみ提出します。) 1부
사. 안전검사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자동차만 제출합니다.)
ト. 安全検査証(「自動車管理法施行規則」第37条に基づき安全検査を受けた自動車のみ提出します。)
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며,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각 1부
チ. 代理人が申請する場合は、委任状及び委任した者の身分を確認できる身分証明書の写し(法人の場合は法人印鑑証明書を指し、当該法人が提出した使用印鑑届を登録官庁が照合・確認できる場合、提出は不要です。) 각 1부

2.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

2. 抹消登録された自動車を再登録する場合

- 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말소사실증명서로는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イ. 所有権を証明する書類(抹消事実証明書では所有権を証明できない場合のみ提出します。) 1부
나.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ロ. 臨時運行許可証及び臨時運行許可ナンバープレート(臨時運行許可を受けた場合のみ提出します。) 1부
다. 신규검사증명서 1부
ハ. 新規検査証明書 1부
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면허·허가·등록·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용 자동차만 제출합니다.) 1부
二. 「旅客自動車運送事業法」による旅客自動車運送事業、又は「貨物自動車運送事業法」による貨物自動車運送事業に関する免許・許可・登録・認可もしくは届出を証明できる書類、又は事業計画の変更を証明する書類(事業用自動車のみ提出します。) 1부
마. 안전검사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자동차만 제출합니다.)
ホ. 安全検査証(「自動車管理法施行規則」第37条に基づき安全検査を受けた自動車のみ提出します。)

수수료 2,000원.
다만, 사용
본거지와 다른
시·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2,500원입니다.
手数料2,000ウォン。
但し、使用本拠地
と異なる市・道に
申請する場合は
2,500ウォン。

	<p>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합니다.) 각 1부</p> <p>へ. 代理人が申請する場合は、委任状及び委任した者の身分を確認できる身分証明書の写し（法人の場合は法人印鑑証明書）各1部</p> <p>사. 제3자의 승낙서나 권리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 등본(말소등록 당시 저당권 등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자동차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p> <p>ト. 第三者の承諾書や権利関係が解消されたことを証明する書類、又はそれに対抗できる確定判決謄本（抹消登録時に抵当権等の登録上利害関係を有する第三者がいる自動車の場合のみ提出します。）1部</p>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확인사항 特別市長・広域市長・特別自治市長・道知事・特別自治道知事又は市長・郡守・区庁長確認事項	<p>1.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이나 그 밖의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p> <p>1. 所有者が個人の場合、住民登録票抄本、運転免許証又は外国人登録事実証明（住民登録証の写し又は運転免許証の写しその他の使用本拠地が分かる書類に代えることができます。）</p> <p>2. 비사업용 자동차를 등록하는 법인 등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본이나 그 밖의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p> <p>2. 非事業用の自動車を登録する法人等の場合は、事業者登録証又は法人登記事項証明書（事業者登録証の写しその他の使用本拠地が分かる書類に代えることができます。）</p> <p>3. 신청인이 제출하는 서류(「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4호 및 제6호를 제외한 서류)</p> <p>3. 申請人が提出する書類（「自動車登録規則」第27条第1項第4号及び第6号を除く書類）</p>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 여부 「地方税特例制限法」による取得税減免対象の該当有無	<p>[]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p> <p>[] 「障害者福祉法」による障害者で、障害等級1級から3級までに該当する者</p>
	<p>[]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p> <p>[] 「国家有功者等の礼遇及び支援に関する法律」による国家有功者で、傷痍等級1級から7級までの判定を受けた者</p>
	<p>[]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p> <p>[] 「5・18民主有功者の礼遇に関する法律」に基づき登録された5・18民主化運動の負傷者で、身体障害等級1級から14級までの判定を受けた者</p>
	<p>[]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p> <p>[] 「枯葉剤後遺疑症等患者の支援及び団体設立に関する法律」による枯葉剤後遺疑症患者で、軽度障害以上の障害等級判定を受けた者</p>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감면 대상인 경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地方税特例制限法」に基づき取得税の減免対象である場合、該当する項目に「✓」をつけてください。

유의 사항
留意事項

1. 자기인증이 면제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4)
1. 自己認証が免除される自動車（「自動車管理法」第30条の4）
- 가. 이삿짐으로 반입하여 수입되는 자동차로서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입승인이 면제되는 경우
- イ. 引越し荷物として搬入して輸入される自動車で、「対外貿易法」に基づき輸入承認が免除される場合
- 나. 「자동차관리법」 제7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국내에서 운행한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등
- ロ. 「自動車管理法」第70条第1号から第3号までに該当する自動車で、国内で運行した自動車を輸入する場合等
2.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1호)
2. 登録せずに自動車を運行した場合、関連規定に基づき懲役刑や罰金刑に処されます。（「自動車管理法」第80条第1号）

-
3. (휴대)전화번호와 전자우편(이메일)주소는 귀하의 자동차 관리(리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적어 주시고,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할 등록 관청에 알려 주십시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
3. (携帯)電話番号と電子メール（Eメール）アドレスは、貴下の自動車管理（リコール等）に必要な事項を案内する等便宜を提供する目的で利用されますので、ご記入いただき、変更が生じた場合は管轄登録官庁にお知らせください。但し、ご本人が望まない場合は、記入しなくても結構です。
-